2020년 재검토: *장애인 교육 표준 2005*

발제문(Discussion Paper) : 장애 아동의 유아 보육

# 소개

본 발제문의 목적은 *2005년에 작성된 장애인 교육 표준 (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2005, 이하 ‘표준’* )의 2020 년 재검토 (이하 ‘재검토’)에 있어, 호주 정부가 장애 유아의 보육에 관한 자문을 얻는 것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문서는 표준의 역할과 재검토의 목적 및 범위를 설명한2020년 7월 16일에 발행된 첫 번째 문서 [discussion paper](https://disabilitystandardsreview.education.gov.au/discussion_paper/)에 이어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1992 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하 ‘DDA’)* 과 ‘표준’이 어떻게 유아 보육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장애 유아의 보육에 대해 이전 재검토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과, 이번 재검토에서 듣고 싶은 내용들, 참여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견해와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토론 질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어린 시절이 장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및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습득한 기술과 능력은 후에 성인으로서의 성공과 안녕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유아 보육 시설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 가족원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2019 년 12 월 분기에, 90 만 이상의 가구에서 130 만 명의 어린이가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2018 년 호주 통계청의 장애,노인, 보호자 설문조사 (SDAC)에 따르면,  **0 ~ 4 세 아동의 4 %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 *1992 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유아 보육

1992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DDA)**](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125) **은 거의 30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연방 법률입니다**.

DDA 에 의하면**, 장애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DDA는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생활 영역에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모든 유아 보육 시설은 반드시 DDA를 준수해야 합니다.**

**DDA의 22항**은 교육 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 신청을 거부 또는 수락하지 않거나, 개인을 차별하는 입학 특정 조건을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제공자가 장애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장애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과과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

만약, 유아 보육 시설이 DDA가 정의하는 교육 기관 또는 교육 제공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DA의** **24항** 에 의거 **,** 상품이나 서비스, 시설 제공자가 장애를 근거로 해당 상품, 서비스, 시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을 설명한 약관의 내용도 이에 적용됩니다.

DDA에 따라 유아 보육 **제공자는** 제공자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애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유아 보육에 대한 장애인 교육 표준

***2005년 장애인 교육 표준*** (The ***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2005,*** 이하 ‘표준’)은 2005 년 8 월 18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기반에서 교육 제도 이용과 참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DDA의 하위법으로, 이는 DDA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의 목적은 DDA가 명시하는 장애 학생과 해당 가족의 권리와, 그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표준은 DDA가 의미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표준은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장애 학생의 권리**와 **교육 기관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

* 등록
* 참여
* 교육과정 개발, 인증 및 학습 전달 방식
* 학생 지원 서비스 및
* 괴롭힘과 피해 방지 대책.

**표준에서 말하는** 유아 보육이란, **"유치원(kindergarten)을 포함한 유아원(preschool) (단, 어린이집(childcare)은 제외)"**을 말합니다**.** [[1]](#footnote-2) .

즉, 유아원(preschool)(유치원(kindergarten)을 포함한)등 해당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 아동과 가족에게는 DDA와 표준이 명시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어린이집(child care) 제공자 및 이용 가족에게 적용되는 DDA의 권리와 의무는, 개별 법원의 판결 등에서 얻은 선례에 의존해서 해석됩니다.

표준은 2010 년과 2015 년에 재검토 되었습니다. **2010 년과 2015 년 재검토** 모두 **표준을 어린이집(child care) 제공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특히2015 년 재검토에서는 현재 보육 부문이 유아 교육의 목적이 점점 강조되는 중대한 개혁을 겪고 있으므로, 표준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는 것은 변칙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준이 유아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제공자를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는 것은 현재 유아 보육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잡한 조치들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 **현재 유아 보육 부문에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내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취학 연령 아동 포함) 등 기타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유아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조기 보육 시설 학습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 어린이집에서도 유아원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음).

# 2020 년 표준 재검토

2020 년 표준 재검토의 일환으로 본 위원회는 **가족, 교육자, 유아 보육 제공자가 DDA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정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확보된 정보들은 아래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부모와 보호자가 장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옹호하도록 돕습니다.
* 보육 제공자가 장애 아동에 대한 의무에 대해 더 확실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기준으로 유아 보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검토에 참여하는 방법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환영** 합니다.

유아 보육에 대한 공청회는 2020 년 8 월부터 9 월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유아 보육 분야의 장애 아동에 대한 특정 웨비나(webinar) 및 포커스 그룹 토론이 포함됩니다. 상담 날짜가 확정되면 [Review 's Consultation Hub](http://www.disabilitystandardsreview.education.gov.au/) 에 게시하겠습니다.

Consultation Hub을 통해 서면, 동영상 혹은 음성으로 의견을 제출을 제출하시거나, 설문지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온라인 공청회 등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기회들을 마련하겠습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Review 's Consultation Hub](http://www.disabilitystandardsreview.education.gov.au/) 을 방문해 주세요.

# 유아 보육 제공자들과의 공청회

호주 유아 보육 질관리 위원회(Australian Children '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이하 ‘ACECQA’))는 모든 정부가 호주 질관리 기본 틀(National Quality Framework)에 입각해 유아 보육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설치한 국가 기관입니다. ACECQA 또한 유아 보육 제공자들과 공청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2020 재검토에 제출할 것입니다.

ACECQA의 제공자들과의 상담은 이 발제문이 담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유아 보육, 그리고 정규 학교 교육에 대한 장애 아동의 이용 및 참여를 지원할 다른 기회들에 대한 제공자의 견해를 모색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공청회에 대해서는 ACECQA가 직접 제공자들에게 연락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CECQA website](https://www.acecqa.gov.au/) 를 참조하세요.

개별 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재검토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ACECQA가 주도하는 공청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유아 보육에 있어 장애 아동과 부모 및 보호자들과의 경험에 대해 재검토에 제공할 의견들을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질문들입니다.

의견 제출, 설문지 작성이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 재검토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들은 단지 귀하의 견해와 경험을 이해하고자 만든 지침일 뿐 입니다.

의견을 보내실 때, 본인의 신분(부모 / 보호자, 교육자, 옹호자, 유아 보육 제공자)을 알려 주시고, 또한 가능하다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 분야 (유아 보육 부문 중 어떤 유형의 기관인지(예: 유아원(preschool), 어린이집(centre based day care), 가정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린이집(family day care), 가정 내 돌봄 서비스(in home care), 방과 후 돌봄 서비스(outside school hours care (취학 연령 아동 포함) 등) 도 표기해 주세요.

## 장애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질문

### **유아 보육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말해 주세요.**

* 입학 및 이용 : 유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나요? 입학 과정은 어떠했고, 입학 및 이용 과정과 결과에 만족했나요?
* 참여 :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는 자녀가 유아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해 주었나요? 자녀가 과정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과과정 및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조정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유아 보육 제공자들과의 상담은 어떠했나요? 결과에 만족했나요?
* 장애 아동 지원 :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지원 등, 유아 보육 제공자로부터 자녀가 적절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 괴롭힘이나 피해사례 : 귀하 또는 자녀가 유아 보육 환경에서 괴롭힘이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제해결을 위해 유아 보육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표준 준수 : 유아 보육 제공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불만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나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 전환 : 자녀가 유아 교육이나 보육 시설에서 학교로 옮겨가면서 한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유아 보육 제공자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공유 했습니까?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 아동 :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한 자녀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문화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정 사례 : 장애 아동이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귀하나 아동의 기타 다른 배경들 (예: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전환 상태, 출신 국가 또는 인종, 다른 문화와 언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눠주세요.
* COVID-19 : COVID-19 기간 동안 자녀의 경험들이 일상과 달랐습니까? 이전의 긴급 상황이나 다른 자연 재해 때는 어떠했습니까?

### **귀하와 자녀의 권리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DDA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어디서 들어 보셨나요?
* DDA의 역할을 이해하십니까?
*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귀하와 자녀의 권리를 알고 계십니까?
* 어떻게 하면 DDA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까요?
* 어떻게 하면 DDA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녀의 권리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 유아 교육자 및 제공자를 위한 질문

**장애 아동들과의 경험에 대해 말해 주세요.**

* 입학 및 이용 : 장애 학생들이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귀하는 어떤 경험들을 했나요?
* 참여 : 장애 아동이 유아 보육 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알고 있습니까? 과정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과과정 및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조정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학부모 / 보호자와 상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조정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아동 지원 : 교육 기간 동안 장애 아동을 어떻게 지원 했습니까? 지원 계획에 누가 함께 관여 했습니까?
* 표준 준수 : 학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귀하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전환 : 장애 아동이 유아 보육 시설에서 학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 경험에 대해 나눠주세요.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 아동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 아동을 지원 한 경험에 대해 나눠주세요. 장애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도록 어떻게 도와 주었나요? 장애 아동의 가족 및 보호자들과의 상담은 어떠했나요? 문화적으로 적절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까?
* 특정 사례 : 장애 아동이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 혹은 보호자의 기타 다른 배경들 (예: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전환 상태, 출신 국가 또는 인종, 다른 문화와 언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해당 아동이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나눠주세요 .
* COVID-19 : COVID-19가 장애 아동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연 재해와 같은 다른 주요 사건 때는 어떠했나요?

### **귀하의 의무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DDA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어디서 들어 보셨나요?
* DDA의 역할을 이해하십니까?
* DDA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교육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 장애 아동이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 귀하가 속해 있는 유아 보육 기관 / 책임자는 귀하가 DDA에서 명시한 의무를 다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협상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나요?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할지 여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 어떻게 하면 DDA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까요?
* 어떻게 하면 DDA가 명시하는 의무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까요?

# 접근성

장애인들이 본 재검토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문서 작성, 수화 통역사 및 캡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제공할 정보와 답변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문서들 및 기타 자료들은 사전에 공개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들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질문에 답하거나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편리한 시간에, 선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끔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공청회의 기간 및 시간 등도 대중의 특정 요구와 요청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참여의 기회를 넓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공청회에서 모인 의견들은 정부에 전달됩니다.

재검토에 기여하시는 모든 의견들은, 정부가 유아 보육 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학습과 관련하여 현재 서비스 제공자들이나 장애 아동 가족들이 DDA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표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변경할 사항, 변경 방법 및 변경 시기와 기간 등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작성할 것입니다.

최종 보고서 및 관련 권장 사항 보고서들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정부 및 비정부 교육 제공자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 활동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재검토의 의도입니다.

재검토 보고서는 2020 년 12 월에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고, 최종 보고서는 2021 년 초 모든 정부에 제공할 것입니다.

## 참여 방법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은 [Review Consultation Hub](http://www.disabilitystandardsreview.education.gov.au/) 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발제문에 실린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서면, 동영상 혹은 음성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 분량제한은 3000 자 이하입니다.

온라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래 주소로 인쇄본을 제출해 주세요.

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Review Team

Disability Strategy Taskforce

GPO Box 9880

Canberra City ACT 2601

## 문의처

본 문서를 포함한 재검토에 관련한 문의는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교육, 기술 및 고용부) [DisabilityStrategy@dese.gov.au](mailto:DisabilityStrategy@dese.gov.au) 로 문의 바랍니다.

웨비나 (webinar) 등록, 설문지 작성, 혹은 공청회 참여 문의는 The Social Deck [engage@thesocialdeck.com](mailto:engage@thesocialdeck.com) 또는 전화[0491617118](mailto:engage@thesocialdeck.com) 로 문의 바랍니다.

1. *2005년 장애인 교육 표준* 참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05L00767> [↑](#footnote-ref-2)